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을 배추김치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안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중요관리점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규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안 제3조의3)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다. 인증 대상 및 시기 (안 제3조의4 및 부칙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안 제3조의5)

인증기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3조의6)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가 있는 경우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취소 기준 등 규정 (안 제3조의7, 별표 1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

사.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 확대 (안 제31조)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은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를 해당 부적합 수입식품등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으로 한정하여 신속 수입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의6(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인증 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7(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제3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및 제3조의3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 ②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등록·지정·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라목 단서 중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된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정 등 신청

가. 인증신청(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나. 변경 인증 신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10,000톤 이상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0월 1일
2.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3년 10월 1일
3.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0월 1일
4.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해외제조

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5년 10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0월 1일

제2조(조건부 수입검사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p> <p>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p>

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
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
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
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
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
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
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
차 및 방법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
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
는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
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
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법 제6조2제1항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
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
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
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고,

<신 설>

<신 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평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① ~ ⑧ (생략)

제3조의6(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인증 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7(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삭 제>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생 략)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3. 4. (생 략)

제50조(수수료)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지정·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현행과 같음)
2. -----

----- 수입식품등(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3. 4. (현행과 같음)

제5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제3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및 제3조의3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등록·지정·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7제2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분 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3호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라.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바.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1호	인증 취소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2호	인증 취소
4. 제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4호	시정 명령
5. 법 제5조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4호	인증 취소
6. 위의 제1호마목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인증 취소
7. 제1호아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인증 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the required documents. Applicants do not fill in the darker blanks of this form.

접수번호 Registr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pplication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인증: 120일 For certification: 120 days 연장: 120일 For extension: 120 days
신청인 Applicant	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establishment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소재지(공장) Address of Establishment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HACCP팀장 Person responsible for HACCP		
신청 내용 Content	HACCP적용 식품명(유형) Food items(type) subject to HACCP plan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1) and 3-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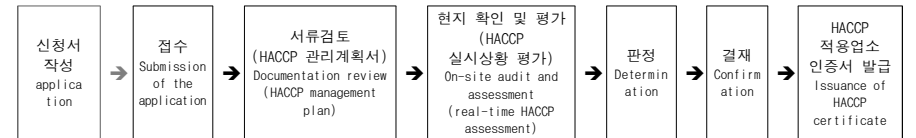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인증기관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	<p>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A HACCP plan(a voluntary plan explaining critical limit, monitoring method, corrective measure and HACCP verification) for each type of food subject to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p> <p>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ion for HACCP-applied Establishment (submit only when extend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3))</p>	수수료 Fe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5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인
Applicant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 applied establishment)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Application for Change in Certification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the Note in the back page. (앞쪽 front)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pplication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120일 120days
신청인 Applicant		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establishment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소재지 Address	대표자 Representative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연락처 Contact number

변경사항 Changes	변경 전 Before Change	변경 후 After Change
중요관리점 CCP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Steps or process to eliminate hazards or secure food safety)		
기타 Etc. (대표자명 등) (i.e name of representative)		

변경사유 Reason for Change

분실사유 Reason of Los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changes in the certificat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2)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인증기관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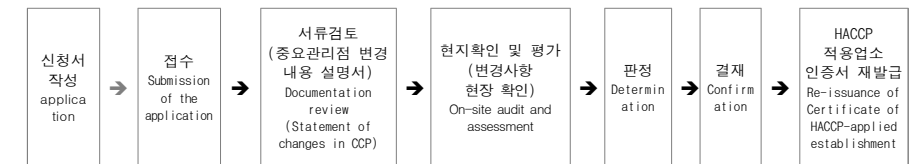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1부 A copy of statement of changes in CCP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A document to confirm the changes	수수료 Fe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5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유의사항 Note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인증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n case of a lost certificate, please fill in the Reason for Loss and do not need to attach a copy of certificate.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인
Applicant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applied establishment)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